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 연 하*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언론학박사

■ 국 문 초 록

AI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저작권재산권에 집중되었고, AI와 저작권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상의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저작권권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룬 판례와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거의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권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저작권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각국의 저작권권 입법례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저작권권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의 일반 법리나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권권의 기본 원칙에 기초할 때, 인격적 이익이 없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권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주제어: 인공지능, 저작권, 저작권권, AI 창작,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귀속

* hanrover00@naver.com

목 차

- I. 서론
- II. 저작인격권의 법적 성격
 - 1.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개별 권리
 - 2. 저작인격권의 본질
 - 3.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쟁
- III.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검토
 - 1.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와 그 특징
 - 2. 1957년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저작인격권
 -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
- IV.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 1. AI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
 - 2.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 부여의 타당성과 그 근거
- V. 결론

I.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였다. 이제는 바둑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소설, 게임, 디자인,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창작의 주체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2016년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 개발한 AI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는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2021년 오픈 AI가 공개한 AI 이미지 생성기술인 ‘달리(DALL·E)’는 간단한 설명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14년 LA타임즈 저널리스트가 개발한 알고리즘 Quakebot은 지질연구소의 지진경고를 학습해서 지진 관련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

하였다(Denicola, 2016). 최근 챗GPT 등의 AI 챗봇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장작성 역량이 인간 작가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¹⁾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면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 또는 시스템이다(조연하, 2020, 75쪽). 최근에는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과 결합하여 대량의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창작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종종 파괴적인 기술로도 여겨졌던 AI가 이제 산업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 그림 등의 창작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Bridy, 2016). 이에 따라 저작권법 연구영역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추가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인격적 이익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도 인격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인격권은 권리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살아있는 자연인만이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인간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근거할 때 AI 창작물에도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는지, 만약 부여된다면 누가 저작인격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AI의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AI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저작권을 귀속할 것인지가

1) IT World (2023, 1, 13). 기사 쓰는 AI 현실화...CNET, AI 작성 기사 73건.
URL: <https://www.itworld.co.kr/news/273135>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면서도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AI에 의한 결과물(output)”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존재하는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이 저작권자 관련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졌던 경향을 보인다(김도경, 2020, 478쪽). 그리고 저작권 중에서도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AI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Miernicki, & Ng, 2019; Yanisky-Ravid, 2017). 국가별로 저작인격권의 보호 범위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그에 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고도 어렵게 만들었다(Miernicki, & Ng, 2019)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 영역(personality sphere)”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계나 기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긴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는 AI가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가 미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절실하다(Miernicki, & Ng, 2020, 319쪽). 이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및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과 관련 입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작인격권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인 논의를 해보았다. 저작인격권 관련 법원의 판결 성향을 보면, 개별 권리인 공표권,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판례²⁾는 비교적 많이 존재하지만, 저작인격권에 관한 전체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7980 판결;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등.

적인 의미를 밝힌 판례³⁾는 별로 없다(계승균, 2008, 497쪽). 또한 아직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며, AI 창작물의 저작권격권 관련 판례도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격권에 관한 기존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별히 지금까지 형성된 저작권격권의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거나 규범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기존 법리에서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계승균, 2021)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II. 저작권격권의 법적 성격

1. 저작권격권의 개념과 개별 권리

저작권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자에게 저작권격권이라는 정신적(spiritual) 권리를 주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김경숙, 2012, 315쪽). 한마디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personality)을 보호하는 개념이 저작권격권이다.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적 발현 또는 분리체로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룰 때 저작자의 인격이 존중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격권은 저작물 이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임원선, 2020, 116쪽), 특허권과 같이

3) 저작권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와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개별 권리들이 저작권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를 다루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인격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인격권이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임을 의미한다. 독일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개인의 인격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자 개인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이규호, 2010; 이상정, 2019).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내용이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작물에 저작자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저작자 의사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통해 저작자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나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둘 사이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관계 보호는 저작인격권의 중요 요소이자 저작자의 창의적 결정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프랑스의 판례와 1957년 저작권법, 베른협약, 그리고 저작인격권 보호에 비교적 인색한 미국의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작자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한다(Leimer, 2011, p. 71). 일반적으로 영어의 ‘moral right’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droit moral’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droit moral은 유럽 대륙에서 저작권 부여의 전통적 틀로 사용되는 경제적 권리의 반대말을 의미하며(Rigamonti, 2006, p. 355), 도덕 그 자체보다는 윤리적 행위 또는 공공이익에 기반한 권리라는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영어의 ‘personal right’가 적합하다는 것이다(Liemer, 2011, p. 69). 또한 저작인격권 개념은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에서 자신의 개인주의와 개성을 표현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므로(Yonover, 1996, p. 86),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법계에서 기원한 저작인

격권 보호 개념이 저작물의 도덕성에 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과 개성의 보호가 목적인다는 점에서 독일어의 인격권을 의미하는 Persönlichkeitsrecht(Rajan, 2011, p. 909)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정(2019)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저작자 인격권’이란 명칭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용되었다. 베른협약이 성립된 초기에는 저작인격권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개정된 로마 회의에서 처음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였고 1948년 저작인격권 인정을 의무화하였는데, 구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로 지명될 수 있는 귀속권(attribution)과 저작물의 절단이나 왜곡에 반대하면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권리(integrity)라는 두 가지 별개의 전형적인 저작인격권을 제시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근본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공표권의 누락과 자국에의 저작인격권 반영 여부를 회원국 자율에 맡겼다는 점이 베른협약의 한계(윤권순, 2018, 113쪽)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공표는 자기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며, 저작물이 공표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권태상, 2019, 202-203쪽)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저작물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⁴⁾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4) 대법원 2004. 4. 21. 선고 97후860 판결.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귀속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성명표시권의 공익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 인정의 근거는 저작자의사에 반하는 타인에 의한 저작물 변경과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완전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저작물을 원상태로 후손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와 디지털 시대에 기술로 인해 위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저작인격권 유형이기도 하다(박인회, 2018b). 게다가 권리의 보호 또는 인정 범위에 있어 저작재산권인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큰 권리이기도 하다.

대부분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것의 보호 범위나 유형을 통일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접근권(right of access), 철회권(right of recall)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접근권이라고도 부르는 접근권은 저작물 양도 후에도 접근 조건이 원저작물이나 복제물 점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원래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이나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⁵⁾이다. 또 철회권은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후에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유통단계에서 그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오승중, 2020; 이해완, 2019; 임원선, 2020). 그 밖에 배타적 발행과 출판의 경우 저작물을 수정·증감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도 넓게는 저작인격

5) 미술저작물처럼 저작물을 수록 매체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한 후에도 저작물에 접근해 스케치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 수 있다(임원선, 2020, 131-132쪽).

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유형이나 보호 범위의 복잡성은 이 권리가 다양한 문화적 이익을 반영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Rajan, 2017, p. 316). 각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이나 문화정책의 차이로 각국의 실정법이 다르므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작인격권도 마찬가지이다.

2. 저작인격권의 본질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동안 저작권에 관한 논쟁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저작권법 역사에서 중요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늘 그늘에 있었다. 그 이유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의 권리이며, 저작물의 귀속과 완결성과 관련된 것이고 보통 간접적인 상업적 결과를 수반하는 권리라는 저작인격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저작인격권은 근대 저작권 담론을 지배하는 강력한 경제적 고려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Rajan, 2019, p. 257).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이다. 이것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개인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권태상, 2019; 이재진, 2006). 일반적인 인격권은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같이 구체성을 가지는 개별 인격권의 총체로, 그 본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⁶⁾는 이 조항이

6)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결정.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보았는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판결에 근거하면, 일반적 인격권이란 “기본권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또는 기본권 주체의 인격 발현을 위한 자유, 기본권 주체와 밀접한 인격적 연관을 가진 권리”로 정의된다(이부하, 2022, 145-146쪽).

저작인격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격권과의 분리설과 일체설로 학설이 대립한다. 먼저 분리설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이 일반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한다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질상 다르다고 본다(김형렬, 2012, 54쪽). 또 분리설에서는 권리 주체와 객체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즉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보장되며, 보호 대상이 인격 그 자체이고 권리 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이다. 이에 비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며, 저작자 인격으로부터 독립한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고,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이다(오승중, 2020; 이해완, 2019). 반면 일체설은 저작인격권이 저작행위를 하면 부여되는 권리인데, 누구나 저작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격권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 외에 일반적 인격권에 기하여 새로운 종류의 저작인격권 보호도 생각할 여지를 두어 저작자 인격을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김경숙, 2012, 318쪽). 실제로 대법원⁷⁾은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리 주체와 객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파생된 인격권으로서의 본질까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체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일신전속성에 기반할 때, 결국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 성립요건인 창작성과 독창성 외에 인격, 비경제적 이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의 생산 장려에 객관적인 목적이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기반한다(Miernicki, & Ng, 2020).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또한 동법 제38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때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저작인격권도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는다.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격권을 제정한 초기와 다르게,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중요시되는 거래일 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인정과 양도성 금지의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있다(이광성, 2017).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작이 예정된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정사용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법의 공공 정책을 위하여 저작인격권이 제한된다(정진근, 2014, 168쪽).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인격권 각각의 개별 권리에 관한 조항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자와 저작물 소유자 간의 분쟁과 마찰을 줄이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공목적을 위해 공표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김경숙, 2012, 333쪽),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

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명 표시를 변경할 수 있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일정한 경우 저작물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제한 규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유영선, 2006, 58쪽). 저작물이 사회구성원들의 사상과 감정 표현 도구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사상과 감정의 표현은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므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제한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정진근, 2014, 180-181쪽). 한편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 포기 또는 불행사 합의에 관해서는 배른협약이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우리 저작권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인격권이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어서 이를 포기하더라도 그와 같은 포기는 무효라는 법원 해석⁸⁾에 따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주체는 오직 자연인 개인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 등의 단체가 된다고 봄으로써,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법인 등에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창작자인 피용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박현경, 2010; 신재호·유용석, 2020; 이해완, 2020; 조영선, 2013; 한지영, 2022)가 지배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⁹⁾되고 있다.

8) 서울지방법원 1997. 10. 24. 선고 96가합59454 판결.

9) 2020년 말부터 시작하여 2021년 초까지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창작자에게 부여할 것, 업무상저작물에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할 것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쟁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 인정의 근거 또는 타당성,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석상의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우선 저작인격권을 옹호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철학적인 논거는 저작자가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저작물의 이용에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에 의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부수적으로 산재한 보호 법리가 정리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저작자가 손쉽게 권리를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규정이나 불법행위법 만으로 소유자의 내용 변경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미술저작물과 같이, 일반법의 법리로 인정되기 힘든 구제책을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얻는 이점이다(이상정, 2019). 셋째,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와 부합된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작자 보호를 통해 더 많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강명수, 2013, 737쪽).

반면 저작인격권 인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의 근거는 첫째, 일반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 등과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법리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작인격권 입법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또한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보호되는 인격권이며, ‘무단 변경 이의 제기권’도 일반적 인격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즉 일반법을 적용하여 베른협약의 요구사

향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굳이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강명수, 2013; 이상정, 2019).¹⁰⁾ 둘째,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양도불가성이란 속성으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저작물을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저작권 양수인이 저작인격권의 양도불가성을 고려한 양도 대가 결정으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내용 등의 수정·가감 등을 당연시하는 일반 당사자들의 법 감정을 등한시 함으로써 저작자 및 저작물의 거래 안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이 과연 저작자 보호를 위한 권리인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강명수, 2013).

셋째, 저작인격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 2차적저작물 작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그리고 공정이용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진근, 2014, 170쪽). 대법원¹¹⁾은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라 하여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외형 내용을 수정, 증감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설사 저작물 변경으로 인해 그 가치가 높아졌다 해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강한 보호는 패러디를 제한하고 개작을 불가능하게 하며, 저작물의 개선조차도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넷째, 저작인격권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위해 일종의 저작재산권처럼 사용하는 최근의 경향(박인회, 2018a)이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을 낮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근(2014)은 명예나 명성의 훼손이 없는 경우까지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 제도와 더불어 산업성이 강한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180쪽). 저작권법이 문화 및

10) 저작인격권의 입법 이전에 불법행위법, 민법으로 인격권을 폭넓게 보호받았던 프랑스에 비해, 독일이 일반법으로 인격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서 매우 빠른 시기에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 규정을 두었던 입법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상정, 2019, 53-54쪽).

11) 대법원 1962. 10. 29.자 62마12 결정.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산업성보다 예술성이 중요한 시각예술저작물로 한정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등 저작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모든 저작물에 설득력이 있는지가 문제이다(권태상, 2019, 190쪽). 이것은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논의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 저작인격권 인정으로 인한 쟁점을 고려할 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이란 인격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므로 일반적 인격권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경숙, 2012, 321쪽), 저작인격권이 정책적 배려로 입법화되었으므로 저작인격권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강명수, 2013, 741쪽)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였으며 판례도 일관되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이런 혼란은 저작인격권 문제해결에서 인격의 주체인 저작자를 도외시하고 저작물과 저작물과의 비교만을 판단기준으로 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저작물의 일부 이용과 저작물의 동일성 침해를 구분하지 못했고, 저작재산권이 적용되는 경우와 저작인격권이 미치는 범위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이상정, 2019, 65쪽).

Ⅲ.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검토

1.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와 그 특징

서양에서 저작권 입법 초기에는 저작권을 경제적 권리로만 파악하다가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에 입각한 개인 존중 사상에 힘입어 인격권이 법적으로 승인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28년 베른협약 로마 규정에서 저작인격권 보호를 명문화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 시스템과 문화를 대표하는 대부분 국가가 이를 수용하였고, 저작인격권 인정이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었다(이해완, 2019; Rajan, 2011). 이로써 베른협약은 다른 나라의 저작인격권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에서 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서는 베른협약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강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 협정인 Trips 협정에서 저작인격권의 예외를 두었다(권태상, 2019; 박인희, 2018a). 이렇게 저작인격권은 다양한 국제조약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대부분의 입법례에 저작자 권리로 규정되었다.

사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보호에 중심을 둔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인격권 보호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저작재산권에만 치우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저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나 인격적 가치의 산물로 보고 저작인격권을 본질적인 권리로 파악하면서(강명수, 2013; 배대현, 2006), 저작인격권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저작인격권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권리이다.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입법은 1709년 앤 여왕법이 효시이지만, 저작권격권의 법제화는 그보다 훨씬 늦었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일반법을 통해 보호되다가 저작권법에 명문화된 것은 주로 20세기 이후이다(이상정, 2019). 저작권격권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기원하였는데, 19세기 예술가의 창작물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이후에도 작품의 완결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즉 저작권격권 입법은 예술은 예술가 영혼의 표현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 없이 희석되거나 변경되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발전되었다(Hiatt, 2004, pp. 392-393). 프랑스에서는 19세기 판례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격권 이론과 주요 권리가 발전되었고, 20세기에 와서 1957년 저작권법¹²⁾에 저작권격권이 명문화되었는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 저작물 완성권, 철회권, 과도한 비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6가지 저작권격권을 인정하였다(강명수, 2013; 윤권순, 2019; 이상정, 2019). 제121조 이하에 저작권격권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점은 시청각 저작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저작자의 성명, 지위와 저작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일신전속적 권리 등과 같이 저작자 고유의 권리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 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정이 예정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있다(정진근, 2014, 174쪽)는 점이다. 또한 저작권격권의 개별 권리가 더 많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저작권격권이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찍이 1837년 프러시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190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을 둬으로써(이상정, 2019; 허희성, 2011), 독일을 필두로 저작권격권 입법이 시작되었다. 저작권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저작권격권 조항인데,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명성, 성망의 훼손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12)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권격권의 정신, 의도, 기능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Hiatt, 2004, p. 393).

저작권법과 달리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영국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 등 일반 법리에 의해 규제해 오다가, 1988년 11월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한 「저작권, 디자인, 특허권에 관한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이하 CDPA)」에 저작인격권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제1편 제4장에 저작인격권 규정을 두고, 베른협약의 의무를 수용하여 저작인격권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차이를 보인다(강명수, 2013; 배대현, 2006; Dworkin, 1995). 제79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인쇄 서체 디자인, 컴퓨터에서 기인한 저작물과 같이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정사용에 대한 상세한 저작인격권 제한조항을 둬으로써, 저작인격권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저작권의 공공목적 훼손 가능성을 낮추고, 저작물 배포의 자유와 이용 및 개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정진근, 2014, 175쪽)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영미법 국가 중에서도 미국은 저작권법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촉진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둔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정진근, 2014, 176쪽), 저작인격권보다는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9년에 베른협약 가입 이후에도 저작인격권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국제적 추세에 따라 1990년 개정을 통해 연방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 보호 규정을 두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VARA(Visual Artists Rights Act, 1990)이다. 이 법은 그림, 소묘와 같은 시각적 예술 저작물에 한정하여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인격권 보호 범위가 매우 좁고 제한적인 것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시각적 예술저작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한 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저작자와 문화의 완전성(원형) 보호가 문화와 예술발전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상정, 2019). 산업성 또는 상업성이 강한 저작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며, 저작인격권에도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적용

된다는 점이 우리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이다.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 이용 형태의 변경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으나, 저작인격권 규정은 1986년 전면 개정된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 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저작인격권의 개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오승중, 2020, 245쪽). 제14조 제1항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했다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³⁾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사후에도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 요건을 요구한다. 저작인격권도 상속 대상임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저작권법 여러 곳¹⁴⁾에 두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배대현(2006)은 일신전속은 사망 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정도는 명예훼손에 한하며 사자의 명예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되므로 생존 시 저작인격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157쪽). 또 저작권법 제15조에서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제124조 제2항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박인회(2018a)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저작자 일신 전속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포기와 위임의 가능성 결정을 학설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저작인격권 존속기간 규정의 부재로 인해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해석상 업무상저작물은 그 권리가 영구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다른 어떠한 입법례보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강한 보호가 권리 악용이란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현행 법 규정의 해석

13)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제123조, 제127조, 제128조, 제137 제3호.

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일신전속성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동일성유지권 행사조건으로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188쪽).

2. 1957년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저작인격권

일반적으로 베른협약에서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무단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권리가 각각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거나 상응한다(김경숙, 2012; 박인희·이봉림, 2008; 오승중, 2020; 윤권순, 2018)고 본다.¹⁵⁾ 이에 대해 강명수(2013)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무단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와 동일성을 해치는 자체를 금지하는 권리는 사실상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1957년 구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상 제14조의 귀속권¹⁶⁾과 제16조의 원상유지권¹⁷⁾이 베른협약의 저작자 주장권과 무단 변경 이의제기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석한다. 1957년 구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제정, 공포된 저작권법이면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인격권 내용이 베른협약의 저작인격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의 권리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귀속권, 공

15) WIPO의 베른협약 해설서에서는 성명표시권을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을 무명이나 이명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작품이 아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 사용을 금지할 권리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신창환, 2004, 20쪽).

16)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 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17)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 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관, 절제 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표권,¹⁸⁾ 원상유지권, 변경권¹⁹⁾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성격을 가진다. 제29조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4가지 권리는 영구히 존속한다면 존속기간의 무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권에 관한 제42조 제1항에서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양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한해서는 그 이후의 어떤 개정 저작권법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상유지권만의 침해요건으로 ‘명예와 성망을 해 한 자’라고 규정하여 공표권, 변경권과 다른 특징을 반영했으며, 형사처벌 대상을 귀속권 및 원상유지권 침해로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저작자 명예훼손’으로 제한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저작인격권의 보호 정도를 인격권 성질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명수, 2013, 743-744쪽). 이렇게 볼 때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단일의 권리(이해완, 2019, 448쪽)라고 보는 저작권 일원론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벌칙 제69조에서 귀속권과 원상유지권 규정 위반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한편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이자 기술적 산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은 콘텐츠의 생산, 제공과 소비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컴퓨터 생성물(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컴퓨터 창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로, 둘 다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컴퓨터 창작물은 AI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기술이 창작한 비인간 창작물이란 점에서 저작인격권 인정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²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18) 미공표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것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19)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과 달리 동 법에는 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없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가 AI 창작물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술에 의존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인격권 규정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자의 권리로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현행법상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조항을 두고 있다. 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제7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고 있다. 역시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제15조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강명수, 2013; 이해완, 2019). 먼저 부정설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산업적 특수성상 문학예술 저작물보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련성이 약하다는 점,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잦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 저작권법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동 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동 법의 프로그램저작권 양도조항(제15조)에서 저작재산권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작인격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부정하고 양도 및 포기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긍정설의 논거는 컴퓨터프로그램도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점에서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저작인

20)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 범리로 보호하고자 1986년 제정된 단행법률로, “컴퓨터범죄” 관련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정안, 1996, 256쪽). 동 법은 성격이 유사한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동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4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격권으로 파악하는 기본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동 법과 통합된 저작권법에 일신전속성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동 법(제31조)에서 동 법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 보호에 관해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컴퓨터 창작물, AI 창작물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격권에 관한 입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의 저작물 유형별 특성에 기반하여 저작권격권 보호의 정도나 방식을 달리 할 수 있고, AI 창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저작권격권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

컴퓨터 창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작성한 창작물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진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만든 특정한 결과가 컴퓨터 창작물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녹색서(Green Paper)에서 모든 저작물은 충분한 기술과 그를 제작하기 위한 노동력 등이 충족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컴퓨터를 도구로 창작한 저작물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해석한 바 있다(조연하, 2023, 349쪽).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격권에 관한 입법례는 영국 등 소수 국가에서 볼 수 있으나, AI 창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격권에 관한 입법례는 아직 없다. 이에 컴퓨터 창작물에 관한 입법 검토는 AI 창작물 저작권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컴퓨터 창작물, AI 창작물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입법적인 대안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이 바로 영국의 CDPA(1988)이다. 동

법 제178조에서는 컴퓨터 창작물을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제9조 제3항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79조에서 저작인격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인데,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 창작물 등에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기계는 창작은 할 수 있으나 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창작물은 “저작물이지만 저작자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이양복, 2018, 378쪽).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현실 적합성(practicality)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실질적으로 저작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실익보다 장애 요소가 더 많은 것이다(Dworkin, 1995, p. 252).

CDPA의 컴퓨터 창작물 조항은 제정 당시보다 훨씬 진화된 AI 기술이 만든 창작물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컴퓨터를 전제로 하는 정의 조항은 앞으로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AI 창작물을 보호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손승우, 2016; 허세현, 2021)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더불어 저작인격권 부여의 예외와 같이 인간 창작물 저작권과 일부 차별화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동 법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형태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동 법의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저작권법(1994)도 기본적으로 영국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한다. “컴퓨터 제작”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을 두고 저작물과 관련하여 “컴퓨터 제작물”을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작물이 컴퓨터로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저작자’를 저작물 창작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 사람으로 규정(제5조)하면서, 컴퓨터로 제작된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양복, 2018; Bridy, 2016).²¹⁾

IV.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

1. AI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의 영역에서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품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대단한 창작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면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 또는 시스템이다(조연하, 2020, 75쪽). 아직은 콘텐츠 분야별로 AI의 활용도와 AI 창작물의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종래의 AI 기술의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인간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인간 창작물과 비슷하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AI가 창작한 저작물 정도로 설명되고 있을 뿐, 학술적인 관점에서 개념 정의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윤선희·이승훈(2017)은 ‘인간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게 된 AI 스스로 생성한 표현(162쪽)’으로, 정원준(2019)은 ‘인간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알고리즘 학

21) 미국은 저작권법에 저작자를 인간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청의 실무지침에 따라 인간 창작물만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차상욱, 2020; 최재원, 2017).

습을 통해 창작 능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컴퓨팅 기반의 기계장치로부터 생성된 창작물(3쪽)’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AI 창작물은 ‘인간의 관여 없이 AI가 학습을 통해 컴퓨터 장치 등으로부터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로 정의된다. AI 창작은 초안 작업이나 2차 창작과 같은 인간의 창작활동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창작과정 이 불투명하며, 창작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인간 창작물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워므로 저작자의 판단과 저작권재산권 귀속 주체의 결정이 어렵다(손승우, 2021; 조연하, 2023)는 것이 AI 창작물의 특징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인간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및 창작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에 기반할 때, AI 창작물 보호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김현경, 2017; 손승우, 2016; 윤선희·이승훈, 2017; 이양복, 2018; 차상욱, 2017)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설사 보호하더라도, 대량 생산과 반복적인 창작의 가능성, 인간 창작물과 구분의 어려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나 방식에서 인간 창작물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긍정적이다. 영국의 CDPA(1988) 제12조에서 컴퓨터 창작물 보호기간을 창작된 해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한 것이 그 예이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결국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간 창작물과 차별화해서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AI가 저작권법 영역에 가져온 가장 큰 난제는 누가 AI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AI는 기술발전 정도, 작동방식과 과학기술의 추구유형, 인간과의 관계 또는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약한 AI와 강한 AI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약한 AI는 자체적인 판단 능력은 없지만, 인간이 알

고리즘, 데이터, 규칙 등을 입력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여 한정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강한 AI는 지각력을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율성 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화한다. 약한 AI 창작물은 AI가 인간의 창작영역을 넓히는 수단일 뿐이고 창작과정에 인간이 관여하므로 별도의 논의 없이 인간 창작물로 포섭하여, 실제 창작에 참여하여 최종 창작물을 산출한 AI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한 AI는 인간과 거의 동일하게 창작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저작자 지위 부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강한 AI가 창작한 순수 AI 창작물의 경우, 우선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민법 제3조와 제34조에 따라 AI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자(者)는 사람을 의미하며 AI에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AI를 저작자라고 보기 어렵다(이양복, 2018). 선진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현재의 AI 기술 수준과 인간중심 철학 사조를 근거로 AI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를 부인한다(정상조, 2019, 14쪽). 게다가 창작물은 저작자 개인의 창작적인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된 무체물이므로, 인간이 아닌 저작권 주체는 생각하기 어렵다. AI의 창의력은 알고리즘을 따른 단순한 규칙일 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AI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때 현행법상 AI에 AI 창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AI와 같은 기술이나 기계에 권리가 부여되려면 법인격이 필요하며(Bridy 2012; Yu 2017),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법인격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법 개정 등 입법론적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²²⁾

22)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유럽연합 의회가 통과시킨 ‘로봇 시민법 결의안’에서는 AI(로봇)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조연하, 2023, 349쪽).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에 기초할 때, AI 창작물의 저작자 후보로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I를 사용하여 창작한 사용자(운영자), AI 소유자 또는 투자자, AI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AI를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누구를 저작자로 확정할 것인지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지위 부여의 가능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연하, 2023, 308쪽). 결국 AI가 AI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 AI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경우 인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창의적 입력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사례별로 저작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Miernicki, & Ng, 2020, p. 324). 즉 AI 창작물 생성을 주도한 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최종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낸 AI 사용자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는 등 기존 법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정연덕·운박, 2021; 조연하, 2020).

저작자 판단이 저작자 적격을 논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귀속 주체는 창작물의 타당한 권리자를 논하는 것이다(조연하, 2023, 322쪽).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 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누구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것인지는 저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의 문제이다. AI가 창작 도구로만 사용되는 창작물의 경우, AI는 반복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뿐 창작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자연인의 권리 주체성을 보호하고 저작권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더라도 약한 AI 단계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창작 관여자인 인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인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라도 제작과정에서 창의적인 노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권리 귀속 관계를 나누어 구분해야 하는데(손승우, 2016; 이양복, 2018), 역시 사용자에게 권리를

법안의 핵심은 전자 인간이 자연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인데,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전자 인간에게 자연인, 법인과 다른 제3의 법인격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차상욱, 2020; 최재원, 2017).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슨(Samuelson, 1986)은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전통적인 저작권법 원칙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기계는 창작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므로 지식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작권 귀속 판단에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반면 향후 강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설사 창작의 표현 주체를 AI로 보더라도, 권리 귀속의 주체는 역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라고 보는 현행 저작권 제도에 따르면, AI가 학습하여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을 하나의 권리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으므로(손승우, 2016),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AI보다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정원준(2019)도 현행법상 AI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창작에 기여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창작물을 공유물로 인정하거나 AI 자체에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되 다른 특정 주체에 대한 권리 귀속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자 지위 부여와 권리 귀속의 주체를 분리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AI가 계속 진화 중인 기술이란 점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백히 정할 수는 없으나, AI 사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지, 사용자와 개발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지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창작에 대한 AI나 인간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조연하, 2023, 330쪽).

2.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 부여의 타당성과 그 근거

AI 창작물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성과를 보이는 AI의 특징이 잘 나타

난 결과물이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는 AI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의도 AI 창작물이 저작인격권의 보호 객체인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창작성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따라 AI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떤 저작물이든 기본적으로 표현과 창작성이라는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인간의 의식에서 결정되는 창작성을 저작물성 판단기준으로 보는 현행 저작권법적 해석을 토대로 하면, 순수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은 낮다. 또 인간의 창작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기반하더라도, 인간 통제 없이 AI가 행하는 창작행위 자체는 인간의 행위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I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도 저작자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나 인격적 가치의 산물로 보고 저작인격권을 본질적인 권리로 파악한다. 이에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 인격을 보호한다. 이처럼 저작자의 인격적 발현 보호에 기반하는 저작인격권의 본질에 기초할 때,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저작인격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인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일단 약한 AI 창작물은 인간 창작물에 준하여 저작자를 판단하면 되므로, 저작자로 볼 수 있는 AI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면 된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그에 대한 침해책임도 물을 수 있어서 저작인격권 문제가 비교적 명백

한 편이다.

하지만 순수 AI 창작물은 강한 AI가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아닌 AI는 저작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AI에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으로 인해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인격권이 저작물에 체화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순수 AI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순수 AI 창작물의 창작에서는 AI 사용자의 통제권과 자율성의 범위가 버튼을 누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AI 창작물에 사용자의 개성이 인격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김현경, 2017, 366쪽).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부재한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그리고 컴퓨터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CDPA에 기반하더라도,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 살펴본 대로, 순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할지는 AI 산업의 육성과 기술 및 콘텐츠 창작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 정책에 따라 만약 인간 창작물과 차별화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작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가장 높은 인간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프랑스, 컴퓨터 창작물이나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에 저작인격권 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영국, 산업성이 강하고 유통의 규모가 큰 상업적 저작물에는 저작인격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미국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태도는 산업재산권성 또는 상업성을 갖는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정진근, 2014, 178쪽). 이것은 저작물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와 창작물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저작물이 단순한 재화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창작의 동기와 문화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저작자의 창작 감정과 창작원칙을 알게 해주는 권리이다(계승균, 2008, 507쪽). 그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공익적인 기능이 좀 더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AI 창작물의 기술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인격권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처럼 저작물 유형별로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원상유지권의 침해요건 규정과 형사처벌 대상의 한정 등과 같이 저작인격권 성질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 유형별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논의에서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별하는 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성명표시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는 동일성유지권으로 한정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브리디(Bridy, 2016)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부여한다면 권리의 유형별로 차이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완결성 권리는 근본적으로 저작자의 인격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AI 창작물에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귀속권과 관련해서는 저작인격권의 공적 기능을 토대로 “기여권”이란 새로운 권리를 중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AI의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에게 저작자가 아닌 기여자 지위를 부여하고, 저작물이 AI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AI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AI의 프로그래머, 사용자, 소유자 또는 투자자 등이 저작자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시나소설, 그림 등의 전통적인 저작물에서는 저작자의 감정적 요소가 강한 권리로 여겨졌고, 저작인격권의 핵심인 저작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환경이 창작 형태 내지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으로 인해 몇 번의

유통 후에는 누가 저작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작인격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법리적인 침해라기보다 기술 환경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계승균, 2008). 이와 같은 기술발전이 초래한 저작자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보호의 문제는 AI 창작물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업무상저작물에 적용하여, 법인 등의 단체에 저작인격권까지 부여한다. AI 창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취급한다면, 프로그래머를 코드로 구성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는 오류를 피하고 실행 불가능한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Bridy, 2016, p. 400). AI의 발전을 위해 직무상저작물의 ‘고용인’과 ‘고용주’를 재해석해서 컴퓨터 생성물의 저작자를 AI 개발자나 소유자와 같은 인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Bridy, 2012; Hristov, 2017)의 주장에 기초하면, AI 창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인간이나 법인에 부여함으로써 저작인격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원칙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는 중간에 개입하는 기업이나 저작물의 최종 소비자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인격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Ginsburg, 2003b, p. 1068).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저작물도 그와 같은 저작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저작인격권의 기본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보려는 목적에서 시도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일반 법리에 따르면,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저

작인격권을 부여할 수 없다. 35여 년 전에 제정된 영국의 CDPA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AI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요구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전통적인 원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AI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가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오면 저작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Miernicki, & Ng, 2020, p. 327)는 다소 비판적인 주장도 있다. 한편 저작물의 가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동의 없는 내용의 수정, 증감과 형식의 개편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²³⁾을 토대로 할 때, 저작물로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AI 창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는 현대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창작에서는 권리 귀속이 창작의 중심에 있었다면, 현대의 사이버 세계에서 창작은 정보화 사회라는 미명 아래 정보의 공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또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양상도 속도, 범위나 질·양 등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점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계승균, 2008, 507-508쪽). 현재로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보호의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저작인격권의 기본 법리에 변화가 생긴다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 종류에 따른 입법의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다. AI와 같은 비인간이 창작하는 저작물에 저작인격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대법원 1962. 10. 29.자 62마12 결정.

■ 참고 문헌

- 강명수 (2013).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8호, 725-759.
- 계승균 (2008).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전남대)>, 제28권 제1호, 491-511.
- _____ (2021).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28-253.
- 권태상 (2019).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87호, 189-225.
- 김경숙 (2012).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법학연구(부산대)>, 제53권 제2호, 313-343.
- 김도경 (2020).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전북대)> 통권 64집, 477-522.
- 김현경 (2017).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9권 1호, 331-374.
- 김형렬 (2012).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회·이봉림 (2008).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0호, 235-258.
- 박인회 (2018a). 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인하대 법학연구소)>, 제21집 제2호, 187-208.
- _____ (2018b). 동일성유지권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93-333.
- 박현경 (2010).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139-163.
- 배대현 (2006).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21호, 147-192.
- 손승우 (2016).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83-110.
- _____ (2021).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54-255.
- 신재호·유용석 (2020). 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

- 권), 제65호, 193-226.
- 신창환 (2004).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17권 제2호, 19-30.
- 오승중 (2020). <저작권법 강의>. 서울: 박영사.
- 윤권순 (2018).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89-123.
- 윤선희·이승훈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52호, 155-197.
- 이광성 (2017).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관한 교육적 함의.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129-149.
- 이규호 (2010). <저작권법: 사례·해설>. 진원사
- 이부하 (2022).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미디어 인격권>, 제8권 제3호, 133-169.
- 이상정 (2019). 저작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33-70.
- 이양복 (2018).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경영법률>, 29집 1호, 369-401.
- 이재진 (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해완 (2019). <저작권법(제4판)>. 서울: 박영사.
- _____ (2020). 창작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산업재산권>, 제65호, 109-191.
- 임원선 (2020).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상조 (2019).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AI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발제집, 3-70.
- 정연덕·운 박 (2021).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일감법학>, 48호, 243-269.
- 정 완 (1996).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255-283.
- 정원준 (2019).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1권 제6호, 1-27.
- 정진근 (2014).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계간 저작권>, 제27권 제3호, 167-190.

- 조연하 (2018). <미디어 저작권>, 서울: 박영사.
- _____ (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71-113.
- _____ (2023).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서울: 박영사.
- 조영선 (2013). 현행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계간 저작권>, 제26권 제3호, 34-65.
- 차상욱 (2017).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6권 제3호, 183-235.
- _____ (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권 1호, 5-69.
- 최재원 (2017).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11권 제1호, 117-137.
- 한지영 (2022). 「저작권법」전부개정안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4호, 131-178.
- 허세현 (2021). 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 적용의 한계. <법학논총(전남대)>, 제41권 제3호, 201-223.
- 허희성 (2011).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 프리컴.
- Bridy, A. (2016).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ork made by code. 39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395-401.
- Denicola, R. C. (2016). Ex Mac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69 *Rutgers University Law Review*, 251-287.
- Dworkin, G. (1995).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Moral Rights and the Common Law Countries. *Columbia-VLA Journal of Law & the Arts*, Spring/Summer 1995, 229-266.
- Hiatt, E. B. (2004). The “Dirt” on Digital “Sanitizing”: Droit Moral, Artistic Integrity and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v. Clean Flicks Et Al. 30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375-397.
- Liemer, S. P. (2011). On the Origins of Le Droit Moral: How Non-Economic Rights Came to be protected in French IP Law. 19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65-116.
- Miernicki, M., & Ng, I. (2019) Machines, attribution and integ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ral rights. *Jusletter IT* 21. February 2019.

URL: https://jusletter-it.weblaw.ch/en/issues/2019/IRIS/machines_-attributio_a400b1d060.html__ONCE&login=false.

Miernicki, M., & Ng, Iren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ral rights. 36 *AI & Society*, 319–329.

Rigamonti, Cyrill P. (2006). Deconstruction Moral Right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7, No. 2, 353–412.

Rajan, M. T. S. (2011). Creative Commons: America’s Moral Rights? 21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905–969.

_____ (2017). The Public Interest Case for American Moral Rights: A Response to the Symposium “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8 *George Mason Journal of Commercial Law*, 314–348.

_____ (2019). Moral Rights: the Future of Copyright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 14, No. 4, 257–258.

Samuelson, P. (1986).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1185–1228.

Yanisky-Ravid, S. (2017). Generating Rembrandt: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ccountability in the 3A Era-The Human-Like Authors are already here- A New Model. 2017 *Michigan State Law Review*, 659–726.

Yu, Robert (2017). The Machine Author: What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Fully Independent Computer-Generated Works? 16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45–1270.

■ 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enerated Works and Moral Rights in Copyright

Cho, YounHa

Guest Research Fellow, Media & Future Institute

Most discussions about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 on the author's economic rights, which enable copyright holders to derive income from others' use of their literary or artistic works. In contrast,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author's moral rights, which safeguard th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a creator and their work, remains relatively obscu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ights in copyright and works generated by nonhuman AI entities, seeking a legislative proposal for reform by applying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governing moral rights in AI-generated works. Due to the scarcity of judicial cases dealing with the overall meaning of moral rights and conflict cases on the copyright in AI-generated works, this research examines existing discussions on moral rights and relevant legislative cases. To discuss the fundamental legal doctrines of moral righ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oral right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ir concepts, nature, and deba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granting moral right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This research also reviews the legislation cases, such as laws on moral right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Copyright Act of 1957 of

Korea; former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Korea, which was integrated into Copyright Act in 2009; copyright laws on computer-generated works, such as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 in the United Kingdom. The findings indicate that granting moral rights to AI-generated words, devoid of personal rights, is not justifiable based on general legal doctrines of copyright, which solely confer rights to human being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oral rights that protect the personal and spiritual interests of authors as represented in their work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moral rights, AI creation,
copyrighted work, author, copyright attribution

[논문투고일 2023. 6. 19. 논문수정일 2023. 7. 20. 게재확정일 2023. 7. 24.]